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7. 8. 30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898
- 발 의 자 : 김용석(도봉) 의원(찬성자 9명)
- 발 의 일 : 2017년 6월 8일
- 회 부 일 : 2017년 6월 1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국가직공무원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 6. 16. ~ 6. 23)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분리)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 사무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국민안전처 통합)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수당지급) ----- <u>인사혁신처장</u> ----- ----- ----- -----.

- 동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험관리수당 지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 인사실”이 2014년 11월에 이미 “인사혁신처”로 독립하여 주관부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시험관리수당 등의 지급기준(참고 1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참조)을 살펴보면, 문제출제, 문제검증, 출제관리, 시험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참고 2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참조) 및 타 시도(참고 3 타 시도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참조)와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의 기준을 인사혁신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일성있는 운영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르면 시험관리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지방공무원임용령」
<p>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p>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p> <p>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p>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자료 1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단위	금액	비고
문제출제	객관식	문제당	45,000	
	주관식	문제당	70,000	
	면접문제	문제당	80,000	
	문제검토회의(재직자)	1일/1인	70,000	
문제검증	객관식	문제당	20,000	
	주관식	문제당	40,000	
채점수당		문제당	30,000	
출제관리 (합숙)	평일	1일/1인	90,000	
	휴일			
	점자문제 편집		120,000	
문제심사 선정수당	주·객관식(합숙)	1일/1인	200,000	
	감수위원		200,000	
정답확정	대면회의	1회	200,000	
	서면심의	문제당	50,000	
시험관리 수당	시험장책임관	1일/1인	20,000	
	휴일(반일)		60,000	
	휴일(전일)		80,000	
	평일(반일)		40,000	
	평일(전일)		60,000	
	시험장 준비		50,000	
	시간연장 수당 (시간연장 편의지원)		20,000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수당	반일	1일/1인	외부전문가	200,000
			재직자	150,000
	전일		외부전문가	300,000
			재직자	200,000
임차료		시험실당	45,000	

참고자료 2

2017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급기준	비고		
문 제 출 제	객관식(5지형)		문제당	50,000		
	객관식(4지형)		"	45,000		
	주관식(대문제)		"	70,000		
	주관식(소문제), 전공평가시험(약술형)		"	50,000		
	학제 통합논술시험	분야별	문제당	100,000		
		합숙	1일/1인	300,000		
	기본교재비	일반	문제당	5,000		
		PSAT	"	10,000		
	면접문제	대과제	"	150,000		
		소과제	"	80,000		
	문제검토회의	교수	전일/1인	200,000		
			반일/1인	100,000		
재직자		전일/1인	70,000			
		반일/1인	35,000			
문 제 사 선 정	주·객관식	합숙(1박이상)	1과목	1일/1인	300,000	
			추가선정	1일/1인	100,000	10문제 이상
		비합숙		전일	200,000	
			반일	150,000		
	감수위원	외부위원		1일/1인	300,000	
		재직자		"	200,000	
	윤문위원	교수		1일/1인	300,000	
		기타		"	165,000	
사전심사		1일/1인	200,000			
문제유형개발회의		"	200,000			
정 답 확 정	대면회의		1회/1인	200,000		
	서면심의		"	150,000		
문 제 재 검	교수		1일/1인	200,000		
	교사		"	150,000		
	기타		"	70,000		
	추가검토		"	25,000	10문제 이상	
출 제 관 리	합숙		"	90,000		

구 분				단 위	지급기준	비고	
편 집 기 타	점자문제 편집			"	120,000		
	간호요원(합숙)			"	100,000		
	편집 등	합숙	편집장	"	100,000		
			일러스트레이터		100,000		
			숙련		80,000		
			미숙련		70,000		
비합숙			"	52,000			
시 험 종 사	시험장 책임관			1일/1인	20,000		
	시 험 종사자 (휴 일)	반일		"	60,000		
		전일		"	80,000		
	시 험 종사자 (평 일)	반일		"	40,000		
		전일		"	60,000		
	시험장 준비	구분없음		1일/1인	50,000		
	시험종사자 시간연장 추가수당	5급공채 1차시험 및 지역인제7급	정규시간		1일/1인	20,000	
			1.5배 시간연장		"	40,000	
1.7배 시간연장			"	50,000			
기타 객관식 시험 (5급 공채 및 지역인제7급 제외)			"	20,000			
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	5급이상 (공채, 경채 등)	재직자	반일	1일/1인	150,000		
			전일	"	250,000		
		외부 전문가	반일	"	200,000		
			전일	"	300,000		
	6급이하 (공채, 경채 등)	재직자	반일	"	150,000		
			전일	"	200,000		
		외부 전문가	반일	"	200,000		
			전일	"	300,000		
회화력 평가 수당				1일/1인	300,000		

참고자료 3

2017년 대구시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당
⑨면접 (채용계급기준, 서류전형 포함)			
5급이상	재직자	반일	150,000
		전일	250,000
	외부위원	반일	200,000
		전일	300,000
6급이하	재직자	반일	150,000
		전일	200,000
	외부위원	반일	200,000
		전일	300,000
⑩시험장	임차료	1실/35인 이하 (냉.난방)	15,000 (21,000)
	정리인부임	1실/35인 이하	22,000
⑪시험관리관	본부	1실 ~ 10실	9명 이내
		11실 ~ 20실	16명 이내
		21실 이상	25명
	시험실	1명 ~ 35명	2명
		36명 ~ 70명	3명
⑫인부임	취사청소	1일/1인	120,000

구 분		단 위	수당
①문제출제비		문제당	
객관식(4지형)			45,000
주관식(대문제)			70,000
주관식(소문제)			50,000
면접문제(대과제)			100,000
면접문제(소과제)			50,000
②채점비			
주관식	기본	5부이내	100,000
		10부이내	200,000
	초과	1부추가	3,000
③문제심사선정		1일/1인	300,000
④문제감수	외부위원	1일/1인	300,000
	재직자	1일/1인	200,000
⑤출제관리		1일/1인	90,000
⑥문제재검	교수	1일/1인	200,000
	교사	1일/1인	150,000
	기타	1일/1인	70,000
	추가검토	10문제이상	25,000
⑦문제편집 (편집 의료 간호 등)	편집장	1일/1인	100,000
	숙련	1일/1인	80,000
	미숙련	1일/1인	70,000
⑧시험관리 (면접포함)	시험책임관	1일/1인	20,000
	시험종사자	평일(반일)	40,000
		평일(전일)	60,000
		휴일(반일)	60,000
		휴일(전일)	80,000
		시험장준비	구분 없음
	시간 연장수당	시험시간연장 (본부 포함)	20,000

참고자료 4

2017년 경기도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단위 : 원)

구 분				단 위	2017년	비 고
문 제 출제수당	객관식(5지형)			문제당	50,000	
	객관식(4지형)				45,000	
	주관식(대문제)				70,000	
	주관식(소문제), 전공평가시험(약술형)				50,000	
	면접문제(AP) (도전입논술문제)		대과제		150,000	+50,000
		소과제	80,000	+30,000		
문제심사 및 선정수당	주·객관식	합숙 (1박 이상)	1과목	1일/1인	300,000	
			추가선정 (10문제 이상)		100,000	
	비합숙		전 일	200,000		
			반 일	150,000		
사 전 심 사			1일/1인	200,000		
편 기 집 타	점자문제편집			1일/1인	120,000	
	편집 등	합숙	편집장	1일/1인	100,000	
			숙련		80,000	
			미숙련		70,000	
			비합숙		1일/1인	52,000
채 점	주관식	기본	5부 이내	1건	100,000	
			10부 이내	1건	200,000	
		1부 추가 (11부 이상)		추가 1부당	3,000	
시험종사	시험장 책임관(본부장)			1일/1인	20,000	
	휴 일	반 일		1일/1인	60,000	
		전 일		1일/1인	80,000	
				1일/1인	40,000	
	평 일	반 일		1일/1인	60,000	
		전 일		1일/1인	50,000	
	시험장준비(사전)		구분없음		1일/1인	20,000
시험종사자 시간연장 수당		객관식 시험 시간연장 편의지원		1일/1인	50,000	
면 수 접 당	5급이상 (공채, 경채 등)	재직자	반 일	1일/1인	150,000	
			전 일	1일/1인	250,000	
		외 부 전문가	반 일	1일/1인	200,000	
	전 일		1일/1인	300,000		
	6급이하 (공채, 경채 등)	재직자	반 일	1일/1인	150,000	
			전 일	1일/1인	200,000	
외 부 전문가		반 일	1일/1인	200,000		
	전 일	1일/1인	300,000			
서 류 전 형 수 당		재직자	구분없음	20건이내	100,000	재직자 /외부전문가 구분
		외부전문가	구분없음		150,000	
		재직자	구분없음	20건초과	150,000	
		외부전문가	구분없음		200,000	
시험장 정리 인부임				1실당	22,000	
시험장 임차료 (냉난방비 6,000원 포함) * 냉난방비는 반일기준임, 전일은 2배 지급				1실당	15,000 (21,000)	
편집종사자 급식비				1인/1식	8,000	+1,000
편집조리원 인부임				1인/1일	63,280	+7,040

참고 자료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급단가(원)	비 고
문 제 출 제	객관식(4지형)	문제당	40,000	
	주관식	과목당	50,000	
채 점	주관식(기본료)	5부 이내	100,000	
		10부이내	150,000	
	주관식(초 과)	1부 추가 (11부 이상)	3,000	
문 제 심 사 선 정	평 일(1일/1인)	일당	70,000	
	휴 일(1일/1인)	일당	100,000	
문 제 편 집 관 리	평 일(1일/1인)	일당	70,000	
	휴 일(1일/1인)	일당	70,000	
시 험 종 사	휴 일	전 일	1인당	80,000
		반 일	1인당	60,000
	평 일	전 일	1인당	60,000
		반 일	1인당	40,000
시 험 장 준 비		1인당	40,000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수당	전 일	재직자	1인당	150,000
		외부전문가	1인당	250,000
	반 일	재직자	1인당	100,000
		외부전문가	1인당	150,000
회화력 평 가	기본료(10인까지)	1인/1일	200,000	
	추가료(1인당)	1인/1일	5,000	